

●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

도서관관계법규개정에 따른 한국 도서관계의 당면과제

정필모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 目 次 〉

1. 圖書館行政部署의 소속문제
2. 租稅減免法의 改正問題
3. 司書職公務員의 관련法規改正문제
4. 司書教師의 관련 法規改正문제
5. 圖書館協會의 事業內實化문제
6. 行政府에 대한 建議
7. 圖書館發展委員會에 대한 期待

친애하는 圖書館協會 회원여러분 그동안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은 소외지대에서 묵묵히 圖書館奉仕에 진력해 오신 여러분을 뵈오니 더욱 친숙하고 다양한 감회를 느낍니다. 또한 오늘 제27회 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년전의 圖書館大會에도 오늘의 論題와 유사한 論題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圖書館法 및 그 施行令과 施行規則”이 모두 改正공포된 차제에 이에 따른 “韓國圖書館界의 當面課題”를 검토하고 토의해서 圖書館界的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은 더욱 새롭고 절실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특히 지난 2년동안 多事多難했던 社會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1987年 10月 30일에 우리가 갈망하던 圖書館法을 거의 우리의 意志대로 改正하였고, 이에 따라 改正된 圖書館法施行令이

1988年 8月 16일에 공포되었으며, 또한 改正된 圖書館法施行規則이 금년 3月 2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한편 改正된 圖書館法 第 9條의 규정(同施行令 제 7조)에 따라 文教部長官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가 구성되어 이미 발족되었습니다. (9月中旬)

그러나 우리는 아직 圖書館發展을 위한 출발점에도 채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圖書館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山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課題中에서 주요한 사항을 本人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 圖書館行政部署의 소속문제

둘째, 圖書館振興基金을 設置·運營하기 위한 租稅減免法의 해당 法規개정문제

셋째, 司書職公務員의 직급상향조정을 위한 관련 法規 개정문제

넷째, 司書教師의 직위향상을 위한 관련法規의 개정문제

다섯째, 圖書館協會의 事業內實化문제

I. 圖書館行政部署의 소속문제

지난 9月에 文教部에 圖書館發展委員會가 구성되어 이미 발족되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政府의 機構改編方針에 따라 圖書館行政部署가 文化部로 가게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까지의 동태로 보면 文教部나 文化部가 서로 도서

관행정부서를 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政府의 機構改編說이 있자 昨年에 많은 도서관학과 學生들이 도서관행정부서와 公共圖書館소속이 文化部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한 바도 있으나, 그것은 과거에 文教部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本人개인의 생각으로는 도서관행정부서가 文教部에 있는 경우와 文化部에 있는 경우에 兩者가 모두 長短點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a. 文教部에 소속될 경우

長 點

- 1) 文教部에 소속되면 특히 각급의 學校도서관과 公共圖書館의 教育的인 기능수행을 위한 도서관행정이 일원화되므로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 2) 圖書館法에서 각 地方自治團體가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그 時限이 10년이나 되므로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발전이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文教部소관의 全國 中高等學校 또는 大學의 도서관을 신속히 발전시켜서 잠정적으로 공공도서관기능도 겸하게 하면, 전국민에 대한 공공도서관봉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短 點

- 1) 文教部는 初等學校에서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그 관할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직접적인 教育現場에 관심을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예산확보나 政策은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며,
- 2) 현재 文教部에서 시도하고 있는 圖書館發展計劃案을 보면 아직도 너무 미온적이고 구태의연하며, 도서관행정부서도 겨우 社會教育局(또는 平生教育局)내에 도서관과정도의 기구를 두어 이 방대한 각종도서관에 대한行政을 관장하려고 하는 점으로 보면,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b. 文化部에 소속될 경우

長 點

1)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文化部에 소속되는 것이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本人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文化公報部 산하 각지방의 郡單位에 162개의 文化院이 있는데 이 문화원은 현재로서는 거의 유 휴시설이고,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公共圖書館으로 활용한다면 文化院으로서의 기능도 오히려 強化될 수 있으며 公共圖書館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文化部는 文教部에 비하면 관할범위가 좁은 편이며; 따라서, 예산확보에 유리하고, 도서관행정부서단위는 圖書館局으로 될 가능성 이 많으며, 나아가서는 文化部의 중심부서가 될 전망입니다.

短 點

1) 도서관행정이 분리되어 2元化될 수밖에 없읍니다. 왜냐하면 도서관행정부서가 文化部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初等學校로부터 大學에 이르는 教育機關의 도서관에 관한 行政은 文教部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文教部 내에도 教育기관의 도서관행정부서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長短點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도서관행정부서가 文教部에 소속되는 것이合理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行政部署를 圖書館局으로 하고 圖書館政策을 强化하지 않는 한, 行政部署가 文化部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租稅減免法의 改正問題

改正된 도서관법 제 12조(조세감면)에는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施設 資料 및 運營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產을 기부할 수 있다. ②政府는 제 1항에 의하여 圖書館에 기부한 金錢 기타 財產에 관하여는 租稅減免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圖書館振興基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자면 租稅減免法의 해당 規程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租稅減免法의 개정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한한 조속한 時日內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司書職公務員의 관련法規改正問題

公務員任用令(3조 1항별표)에 司書職公務員의 上限職級이 司書官(4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한 2급까지 상향조정해야 하며, 地方公務員任用令(3조 1항 별표)에 地方司書職公務員의 上限級이 司書官(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적어도 3급까지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의 두가지 公務員任用令改正은 쉽사리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4. 司書教師의 관련法規改正問題

① 教育法施行令(79조1항 별표)에 보면 教師資格基準에 教師는 1급正教師와 2급 正教師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司書教師도 그 직급기준을 정하여 1급司書教師와 2급司書教師로 구분해야 합니다.

② 公務員 보수규정(별표22)大統領令 11847호에 보면; 2급正教師의 기산호봉인 17호봉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 司書教師의 기산호봉을 1급正教師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③ 主任教師任用規程(4조)文教部令 209호에 司書教師도 일반教師와 마찬가지로主任教師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教監 및 校長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司書教師의 진로를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④ 教育公務員승진규정(34조 6호)大統領令 11891호의 현행규정에는 司書教師는主任教師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무평점 加算點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근무평점 加算點을 받을 수 있는 동

시에 司書教師도主任教師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논급한 司書教師의 직위향상을 위한 관련 法規의 개정문제는 모두가 文教部의 소관사항이므로 文教部의 해당부서에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만 한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政府의 意志와 誠意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에도 學校設施設備基準令 大學設置基準令, 國立學校設置令, 公務員手當規程 등이 부분적으로 改正되어야 할 것입니다.

5. 圖書館協會의 事業內實化問題

이상에서 논급한 것은 圖書館을 발전시키기 위한 政策的인 문제와 圖書館의 地位向上을 위한 制度的인 문제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圖書館協會의 事業內實化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들어 켜 보면 圖書館協會는 근 10년동안 圖書館法을 改正하는 일 이외에 圖書館協會 자체의 專門的事業에는 내세울만한 業績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몇가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分類法의 改訂
2. 目錄規則의 改訂
3. 實務便覽의 改訂
4. KORMARC의 標準化
5. 各級圖書館의 藏書構成을 위한 選定圖書目錄의 편찬

① 分類法의 改訂

현행의 韓國十進分類法은 1980년에 改訂된 것이나 이 分類法은 改訂 당시부터 오류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評價도 없었고, 또한 이 分類法은 출판배포된 이래 특히 이른바 分類專門司書들에 의해서는 사용되지도 않고 소외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學術의 발전도 많았을 뿐 아니라 거의 標準分類法이 되고 있는 DDC도 改

訂(제20版)되었으니 우리는 가급적 KDC를 조속한 기간에 충실히改訂해서 韓國의 標準的인 分類法으로定立시켜야 할 것입니다.

② 韓國目錄規則의 改訂

현행의 韓國目錄規則 제3개정판은 1983년에 改訂되었으나 역시 이 KCR도 改訂당시부터 書誌記述部門만 발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評價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目錄을 담당하는 司書들이나 目錄法을 가르치는 教授들마저도 혼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KCR도 조속한 기간내에 충실히 改訂해서 全國의 各級圖書館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標準的인 目錄規則으로定立시켜야 할 것입니다.

③ 實務便覽의 改訂

현재의 韓國圖書館實務便覽은 1966년에 편찬된 것으로 23년이나 되었습니다. 편찬 당시에는 오히려 KDC나 KCR에 비하면 비교적 문제는 적었다고 생각되나 그동안 圖書館實務환경이나 조건이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었으므로 대폭적으로 충실히 改訂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實務便覽은 그 내용상 앞에서 논급한 KDC와 KCR의 改訂이 完了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④ KORMARC의 標準化

KORMARC는 현재 公州師大的 玄圭變교수가 國立中央圖書館在職중에 주도하여 開發한 것으로, 현재의 國立中央圖書館의 전산화목록이 이 KORMARC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이 분야의 專門人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떤 評價나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KORMARC도 KCR의 改訂과 병행해서 評價하고 补完해서 標準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⑤ 選定圖書目錄의 편찬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격년으로 選定 圖書目錄을 편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이를 편찬하지 않고 文化公報部에서 推薦圖書選定目錄을 편찬(21回)하여 圖書館文化(1988.11.12)에 수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이로니칼한 일입니다. 본래 圖協에서 選定圖書目錄을 편찬할 때도 本人은 國內出版圖書를 신중히 심사하여 中高等學校用과 公共圖書館用으로 구별해서 발행하고 中高等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은 이 선정 도서목록에 수록된 도서에 한해서만 구입하도록해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바 있으나 종전대로의 選定圖書目錄마저도 중단되고, 이일을 文化公報部에서 하고 그 결과는 圖書館文化에 발표하게 되었으니 도서관계의 채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하간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은 철저히 다시 추진해서 앞으로는 中高等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이 良質의 藏書를 구성해서 良質의 圖書館奉仕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出版界나 著作家들에게도 경쟁적으로 보다 良質의 도서를 出版普及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6. 行政府에 대한 建議

本人이 觀望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동안 政治的 소용돌이 속에서도 汎國民의in 노력으로 經濟를 발전시켜서 이를 토대로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國位도 향상시켰으니, 이제는 學術과 文化를 더욱 발전시키고 全國의 各地域의 발전을 평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大統領이나 政府與黨의 意志라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는 改正된 圖書館法이나 그 후의 圖書館法施行令 및 同施行規則에 담겨있는 精神이 그리고 西海岸地域開發事業이나, 大統領이 제창한 平生教育의 실현이나 獨學에 의한 學士學位制度의 수립 등이 이러한 政策意志를 표현하는 일련의 일관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地域均衡發展政策의 일환으로 公共圖書館의 발전과 地域代表圖書館의 computer에 의한 情報網構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青瓦臺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음은 더욱 뚜렷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行政부處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國家政策方向을 지켜만 보는듯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圖書館發展政策을 수립해 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한 平生教育이란 文字그대로 國民 개개인이 平生동안 教育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平生教育은 先生과 學生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冊이 바로 先生님이요 그 冊을 읽는 사람이 바로 學生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이 바로 그 地域住民들의 平生동안의 學校이며 동시에 共同의 書齋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全國民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地域에 골고루 公共圖書館을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國民들의 平生education은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大統領이 獨學에 의한 學士學位制度를 수립하고자 하는 意志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經濟的으로나 家庭事情上 大都市에 있는 大學에는 진학하지 못하는 젊은이에게 大學水準의 공부를 스스로해서 그와 동등한 學位나 資格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도 당연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로서 公共圖書館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公共圖書館이 獨學者들의 最善의 大學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國民들은 진정으로 良質의 圖書館奉仕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情報化社會에서도 圖書館이 얼마나 절실하고 친근한 文化福祉施設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政府가 솔선해서 國民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先進國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圖書館發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획기적인 圖書館發展策을 수립하자면 앞으로 새로 設立될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까지 모두 합쳐 5,000내지 6,000개의 圖書館에 관한 行政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文敎部에 그 行政部署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平生education局을 설치하고 公共·學校·大學의 圖書館課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學校圖書館의 경우는 도서관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아도(특히 中小都市의 中高等學校의 경우는 여분의 교실도 있을 것이므로) 教室 2개 정도만 가지

고도 圖書館資料와 施設 및 司書教師가 갖추어지면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속한 기간내에 이러한 學校圖書館體制를 갖추어야 합니다.

新圖書館法(제 5 장 學校圖書館) 제 35 조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學校圖書館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同法施行令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으나, 同法施行令부칙 제 4 조(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司書職員 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令施行日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學校圖書館設置가 뒤로 미루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내”라는 말은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그때까지 미루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舊圖書館法(제 3 장 學校圖書館) 제 25 조 제 1 항에 改正新法과 동일한 조항이 있었으나 과거의 政府에서는 이를 施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先例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새 共和國에서 政府가 法律을 정해놓고 이 法을 施行하지 않는다면, 國民들에게 대해서 民主主義는 法治主義이므로 法律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의 新聞報導에 의하면 앞으로 國民學校에도 computer를 설치하고 computer教育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國民學校學生들에게 computer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 computer의 logic은 최소한 高等學校 이상의 知識水準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教育哲學에서 이러한 發想이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研究나 檢討가 이루어졌는지? computer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空間도 필요하고 이 교육을 담당할 技術人力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와豫算이 확보되었는지? 혹시 이 방침이 computer生產業者들의 商術에 휘말린 시책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投資豫算의 규모는 대단히 방대하리라고 생각되는데 學校의 教育施設이나 환경은 개선이 안되고 圖書館施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computer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教育을 실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先後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만한豫算이 확보만 된다면 圖書館施設을 하고 學生들에게 추천할만한 良書를 다만 몇권이라도 더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讀書를 권장함으로써 그들이 충분한 知性과 情緒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教育의 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몇가지 상황을 보면 政府의豫算이 부족해서 學校圖書館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며 computer교육을 위해서 學校圖書館設置와 그 운영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 圖書館發展委員會에 대한 期待

이상에서도 잠시 논급했으나 이제 圖書館發展委員會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圖書館界에서는 圖書館發展委員會에 대한 期待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本人도 그 委員中の 한 사람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圖書館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政策樹立은 이 委員會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委員會가 圖書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圖書館發展委員會의 存在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體育올림픽을 成功的으로 개최하였으니 이 委員會는 이제 圖書館을 통한 全國民의 學術文化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準備委員會라고 생각하고 最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原稿募集

〈도서관문화〉誌는 6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학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 곳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